

문서번호 : 제 2024-J00211 호

2024-03-22

수 신 : 2024년 협력업체 등록회사

참 조 :

제 목 :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

- 귀 사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납품대금연동제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력회사 등록 및 향후 입찰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-- 아 래 ---

가. 시행시기 : 2023. 10. 4.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적용

#### 나. 취 지

- 원재료 가격 증감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, 계약 체결 시 사전 합의를 통해 원재료 가격 증감분을 약정 및 지급하는 제도

다. 적용대상 : 납품대금의 10% 이상인 주요 원재료(중간재 포함)가 있는 모든 거래

#### 라. 주요내용

- 본 계약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적용 이후 시행되는 연단가계약으로 상기 조건 만족 시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해당하며, 연동제 적용 관련 합의를 위해 희망/미희망 하시는 경우 하기의 자료를 구비하여 강원도시가스(주) 경영지원팀에 제출

##### [납품대금연동제 적용 희망 시 제출 필요서류]

- 본 계약 납품대금의 10%를 초과하는 주요 원재료(중간재 포함) 일체 내역
- 주요 원재료(중간재 포함)의 소요량, 단가, 구입 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주요 원재료(중간재 포함) 소요내역 및 잔여내역
- 납품대금 연동 희망 주기
- 주요 원재료(중간재 포함) 잔여내역 투입 예정 시기

※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자료와 함께 첨부 연동계약서 상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

##### [납품대금연동제 예외조건]

- 계약금액 1억원 이하(부가세 포함)
- 계약기간 90일 이내
- 수탁기업(수주업체)가 대기업/중견기업인 경우
- 위탁기업(발주자)과 수탁기업(수주업체)가 양 당사자 간 미연동을 합의한 경우

※ 미연동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된 미연동 계약서 상 내역 및 미연동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

#### 바. 문의사항

- 경영지원팀 신동규 사원(☎ 033-258-8814)

- (첨 부) 1. 납품대금연동제 안내자료 - 1부  
2. 납품대금연동제 계약서 - 1부. 【끝】

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

